

행복열매 NH연금보험

|무배당|_1604

약관 | 판매월 2016.04



CONTENTS

·보험금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4
·보험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5
·주요 민원사례	10
01 가입자 유의사항	11
02 주요내용 요약서	13
03 보험용어 해설	16
04 보험약관	
일반형 주계약 약관	19
보험료납입면제형 주계약 약관	8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133
별첨① 고객권리 안내문	139
별첨② 고객정보 취급방침	147

보종코드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1604 주계약

일반형(일시납)	I1007236
일반형(월납)(기본형)	I1007237
일반형(월납)(가산형)	I1007238
보험료납입면제형(월납)(기본형)	I1007239
보험료납입면제형(월납)(가산형)	I1007240



보험금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1. 지급절차



2. 접수처

구분	접수처
방 문	전국 농축협 지점, NH농협은행 지점, NH농협생명 지점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6층 지급심사정보입력팀 (우 03752)
팩 스	사고보험금 02)6971-6040 분할보험금 02)6971-6060
홈 페이지	http://www.nhlife.co.kr > 고객센터 > 보험가이드 > 사고보험금 청구

* 문의 : NH농협생명 콜센터 1544 - 4000

3. 청구서류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통(필수) 서류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내방인 신분증(대리 청구 시)
- 청구인(수익자) 통장사본(단, 수익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제외)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

- 암진단 시 : 암진단 확진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진단서 등
- 재해사망 시 :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 재해입증서류*, 사망사실이 확인된 기본증명서등 청구서(당사양식)
- 장해진단 시 : 약관에 의거한 장해진단서

* 재해입증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 응급구조일지 등



보험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사항을 표준약관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이란?

금융감독원에서 개별보험약관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표준화하여 정해 놓은 것으로, 표준약관과 다르게 개별보험약관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설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7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 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철회한 때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가입하신 상품의 보장개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계약이 승낙되기 전이라 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다만, 암진단특약 등 일부 특약은 계약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 과된 이후에 보장이 개시되니 반드시 해당 약관의 보장개시일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진단특약의 암보장개시일 규정 예시]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예시 2015년 1월 1일에 최초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암보장개시일 : 2015년 4월 1일
(2015년 1월 1일 + 90일 = 2015년 4월 1일)

4.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신 경우 연금상품은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대출상환이 완료되어야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표준약관 제33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설

- 》 보험계약대출이 존재하면 연금을 주기적(매월, 매년 등)으로 수령할 경우 해지환급금 등의 감소로 인해 연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대출금 상환을 통해 장래 발생하는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고객님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하신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 취소가 불가합니다.



표준약관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해설

- 》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취소는 불가합니다.
- 》 계약 해지 시에는 보장이 종료되고,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가입설계서상 예시된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3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설

- 》 금리연동형 상품은 공시이율 등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변동에 따라 이자발생 금액이 변동되므로 가입당시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1. 해지환급금 관련 사례



내용

- 목돈을 마련코자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A고객은 보험모집인 B씨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음
- 보험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 매월 0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뿐만 아니라 은행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함
- A고객은 보험모집인 B씨의 설명만 듣고, 서류검토 없이 청약서에 서명함
-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해지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최초 안내받았던 내용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주의사항

- ▶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내용

- 55세 여자인 C고객은 건강이 걱정되어 보험모집인 D씨에게 보험가입에 대해 문의함
- 보험모집인 D씨에게 **보험을 권유받았고, 이에 3~4개월 전 혈압검사 등으로 3일정도 입원한 사실을 보험모집인에게 말하고 가입을 완료함
- 얼마 후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해지 당함
- C고객은 가입당시 보험모집인 D씨에게 과거병력을 알렸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함



주의사항

- ▶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신의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 보험은 일반 임상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약 실수, 공의 등으로 누락할 경우 보험계약은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금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재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금리연동형보험으로 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액, 해지환급금 등은 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규모, 중도인출, 생활자금자동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보험료 미납여부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액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종신연금 이외의 연금지급형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용은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형과 자유설계연금(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과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 중 하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품설명서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월납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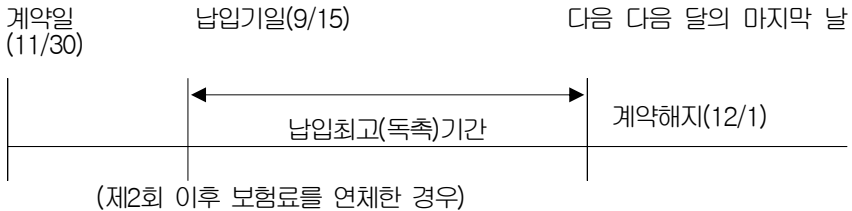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예시)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월납에 한함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1. 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13. 계약자적립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제3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14. 기본보험료

일시납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월납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15.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 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행복열매 NH연금보험

|무배당_1604

일반형 주계약 약관

 목 차

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4
제1조 목적	24
제2조 용어의 정의	24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27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7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7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9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9
제7조 보험금의 청구	30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30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31
제10조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31
제11조 주소변경통지	32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32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33
제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33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33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34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35
제 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5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35
제18조 청약의 철회	36
제19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36

목 차

제20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37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7
제22조 계약의 무효		39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40
제24조 보험나이 등		42
제25조 계약의 소멸		43
제 5관 보험료의 납입		44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4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5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46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47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48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9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50
제 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50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50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51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51
제3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51
제37조 해지환급금		52
제38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52
제39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53
제40조 보험계약대출		54
제41조 배당금의 지급		54

목 차

제 7관 분쟁의 조정 등	55
제42조 분쟁의 조정	55
제43조 관할법원	55
제44조 소멸시효	55
제45조 약관의 해석	55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5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55
제48조 개인정보보호	56
제49조 준거법	56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6
 제 8관 행복열매자금 특칙	 56
제51조 특칙의 적용	56
제52조 '행복열매자금'의 설정	56
제53조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57
제54조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기타사항	57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58
[별표2] 재해분류표	64
[별표3] 장애분류표	65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83

제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장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계약은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의 청약** :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라.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제3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마. 생활자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활자금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생활자금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말합니다.

바. 행복열매자금

연금지급개시 전 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용을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자유설계연금(Ⅰ), (Ⅱ), (Ⅲ), (Ⅳ)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다.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라.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일시납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월 납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 회한)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때(다만,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의 연금 지급해당일에 도래하였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단, 행복 열매자금 제외)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의 장해지급률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① 연금수익자는 연금지급형태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금수령의 일시중지(이하 ‘연금수령 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금수령 일시중지는 계약자와 연금수익자가 같은 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수익자는 연금지급개시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의 경

우 연금지급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최대 3회까지 연금수령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금수익자가 연금수령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년이 지나기 전까지 연금수령 일시중지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연금수령이 일시중지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연금수령 일시중지의 종료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년까지 연금수익자가 선택한 횟수에 따라 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한 연금(이자 포함)부터 순차적으로 연금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년이 되는 시점에 연금수령 일시중지의 종료가 자동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아 연금수령이 일시중지된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자 포함) 전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일시중지된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자 포함) 중 미수령 금액을 함께 연금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하더라도 보험기간 및 보증지급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제1조(목적) 제2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청약할 때 다음에 정한 종신연금 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종신연금
 - 개인연금형 : 10년보증지급형 ~ 40년보증지급형, 100세보증지급형
 - 부부연금형 : 10년보증지급형 ~ 40년보증지급형, 100세보증지급형

제20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종신연금[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며, 부부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하 ‘주피보험자’라고 합니다)과 연금지급 개시할 때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른 부부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자격취득시점부터의 연금액은 새로이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 ⑥ 종신연금[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을 제외한 다른 연금지급형태의 경우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전자서명법** : 디지털적인 수단으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것을 도장을 찍은 종이 등 기존 서류에 대해 한 서명이나 사용인감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법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2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용어 설명]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 **심신상실자** :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 **심신박약자** :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
 2.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보험료납입기간
 3. 계약자
 4. 연금개시나이
 5.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
 6. 연금의 지급형태
 7.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 역시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감액된 부분과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감액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해지환급금 지급예시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감 액 전	감 액 후
기본보험료	100만원	50만원
감액시점의 해지환급금	800만원	400만원
감액시 지급금액	400만원 =(800만원 - 400만원)	

- ⑥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 납입기간과 변경 후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자는 제1항 제4호의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 개시 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의 연장은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⑧ 계약자는 제1항 제5호의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은 0% ~ 50%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합니다.
- ⑨ 계약자는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으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경우 조기집중기간(5년~20년) 및 조기집중배수(2배~5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종신연금

- 개인연금형 : 10년보증지급형 ~ 40년보증지급형, 100세보증지급형
- 부부연금형 : 10년보증지급형 ~ 40년보증지급형, 100세보증지급형

2.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20년보증지급형

3.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5년확정형, 10년확정형, 15년확정형, 20년확정형, 30년확정형

4. 상속연금(개인연금형)

5. 자유설계연금(Ⅰ)형

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부부연금형 : 종신연금(부부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6. 자유설계연금(II)형

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부부연금형 : 종신연금(부부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7. 자유설계연금(III)형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8. 자유설계연금(IV)형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⑩ 계약자가 제9항에 따라 자유설계연금(I), (II), (III), (IV)형으로 변경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에 대하여 조립하는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분할비율(이하 ‘연금분할비율’이라 합니다)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⑪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⑫ 제9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연금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자유설계연금(I)형 또는 자유설계연금(III)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나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 | | |
|--|--|
| 예1) 2014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5년 6개월 11일
⇒ 보험나이 26세 | 예2) 2014년 11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2014년 11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6년 1개월 11일
⇒ 보험나이 26세 |
|--|--|

제25조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

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 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약관용어 설명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③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나목의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단,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0%)이내로 하며,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제39조(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합계액(이하 ‘인출금액 합계액’이라 합니다)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최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하며, 경과기간에 따른 최대 한도는 아래의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일시납의 경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 ×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인출금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2. 월납의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text{월납 기본보험료} \times \text{가입후 경과월수} + \text{선납보험료}) \times 200\%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text{인출금액 합계액}$ 으로 합니다.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으로 이체하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 ①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로서 납입일시중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대체보험료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의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특약의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본보험료만 납입하되, 특약이 부가된 경우로서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중인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납입일시중지 신청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포함)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과 보험료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④ 납입일시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으로 하고,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최대한도로 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 신청시점에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1년간의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 신청 전으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리며,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매월 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
 - =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과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납입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다만, 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와 납입 중 계약관리비용의 합계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의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
- ②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자유설계연금(Ⅰ), (Ⅱ), (Ⅳ)형의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계약자가 선택한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1.25% 최저보증)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25%일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25%)로 적립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life.co.kr)이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안내’에서 공시합니다.

제3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을 계산 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8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의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에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잔존 납입중지월수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

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과 제39조(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생활자금의 총합계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출 후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 예시

가정) 해지환급금 300만원,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600만원,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 인출 후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100만원)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120만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야 하므로 2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⑤ 제1항에 의해 중도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 기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개시이후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1.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단, 일시납의 경우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신청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② 생활자금은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생활자금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생활자금은 신청일 이후 두 번째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매월 지급하며, 생활자금 자동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생활자금 자동 인출을 신청한 경우 생활자금의 지급횟수는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서 정한 중도인출 신청 가능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는 중지되며, 중지 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3. 제27조(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 제3항의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4.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의한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5. 제40조(보험계약대출)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
- ⑥ 제5항에 의해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생활자금자동인출서비스는 계약자의 재신청이 있을 때 제1항에 따라 재시행 합니다.
- ⑦ 제1항에 의한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산출시 적용된 공시이율 및 인출시점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 ⑧ 제1항 및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생활자금과 중도인출금의 총합계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⑨ 생활자금 자동인출 시 생활자금 및 생활자금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약관용어 설명 】

-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

제4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약관용어 설명 】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8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9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8관 행복열매자금 특칙

제51조 【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계약자가 ‘행복열매자금’을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52조 【‘행복열매자금’의 설정】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

금의 0%~50%내에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행복열매자금은 매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제53조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 ① 연금지급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열매자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연간 중도인출가능 횟수	최소 인출금액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10만원 이상

- ②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또는 피보험자(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에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미인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인출 잔액을 일시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후에는 ‘행복열매자금 중도인출총액 - 행복열매자금 추가납입총액’과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④ 제3항에 의한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적립순 보험료를 행복열매자금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직후의 행복열매자금적립금 잔액이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의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을 전부 인출한 이후에는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제54조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기타사항】

- ① 계약자가 행복열매자금을 설정한 경우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행복열매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52조(‘행복열매자금’의 설정) 제1항의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재해 장해 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2,000만원

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구분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개 인 연 금 형	종신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합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구분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부 부 연 금 형	중신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 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보증지급기간(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까지 연금 지급 후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를 지급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절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조기 집중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 및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기간(5년~20년)과 조기집중배수(2배~5배)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연금액 지급(20년 보증 지급) - 조기집중기간 : 연금액×조기집중배수 - 조기집중기간 이후 : 연금액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절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확정 기간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속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생존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 지급]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마. 자유설계연금(Ⅰ)형(연금지급 개시전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종신연금과 확정기간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위의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보증지급기간 및 개인/부부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기간연금은 위의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 가능]

바. 자유설계연금(Ⅱ)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종신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위의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보증지급기간 및 개인/부부연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사. 자유설계연금(Ⅲ)형(연금지급 개시전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확정기간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확정기간연금은 위의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아. 자유설계연금(Ⅳ)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조기집중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조기집중연금은 위의 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조기집중기간 및 조기집중배수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2.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및 제39조(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의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3.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보장계

약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4.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5.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6. 계약자는 자유설계연금(Ⅰ), (Ⅱ), (Ⅲ), (Ⅳ)형으로 변경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에 대하여 연금분할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7.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 40년,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종신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8.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조기집중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9.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Ⅲ)형에서 확정기간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 미지급된 각 확정기간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10.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Ⅲ)형에서 확정기간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종신연금 및 조기집중연금 미지급분(보증지급기간까지), 확정기간연금 미지급분(연금지급기간까지)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상속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Ⅱ), (Ⅲ), (Ⅳ)형에서 상속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생존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12.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보험료

-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행복열매자금 선택시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행복열매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4. '행복열매자금'이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행복열매자금은 매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15.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0%~50%내에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6. 연금지급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17.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또는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에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미인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인출 잔액을 일시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8.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후에는 “행복열매자금 중도인출총액 - 행복열매자금 추가납입총액”과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19.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행복열매자금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20.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직후의 행복열매자금적립금 잔액이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의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을 전부 인출한 이후에는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21.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자유설계연금(I)형 또는 자유설계연금(III)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I),(II)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IV)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 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 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 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 해 분 류 표

1. 총 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써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II.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애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노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노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노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따뜻)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0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0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ㅋ, ㆁ)
 -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악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었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애판정기준

-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원성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뚜렷한 운동장애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상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운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는 장애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에는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서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서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뺏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체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 ~ 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장애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는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애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 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걸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 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머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및 제37조 제3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고도재해장해 보험금 (제3조 제1호),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제25조 제2항)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연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연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행복열매자금의 적립이율 계산은 연금(제3조 제2호)의 적립이율과 동일합니다.

행복열매 NH연금보험

|무배당_1604

보험료납입면제형 주계약 약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90
제1조 목적	90
제2조 용어의 정의	9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93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93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93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5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96
제7조 보험금의 청구	96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96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97
제10조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98
제11조 주소변경통지	98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99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9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99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99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00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101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01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101
제18조 청약의 철회	102
제19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103

목 차

제20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103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04
제22조 계약의 무효		105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06
제24조 보험나이 등		109
제25조 계약의 소멸		10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10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10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11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112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14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15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15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16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117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17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17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17
제3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17
제37조 해지환급금		118
제38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118
제39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119
제40조 보험계약대출		120
제41조 배당금의 지급		121

목 차

제7관 | 분쟁의 조정 등 121

제42조 분쟁의 조정		121
제43조 관할법원		121
제44조 소멸시효		121
제45조 약관의 해석		121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22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22
제48조 개인정보보호		122
제49조 준거법		122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23

제8관 | 행복열매자금 특칙 123

제51조 특칙의 적용		123
제52조 '행복열매자금'의 설정		123
제53조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123
제54조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기타사항		124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25
[별표2] 재해분류표		131
[별표3] 장애분류표		131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32

제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장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계약은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보장계약
 - 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면제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의 청약** :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제3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마. 생활자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활자금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생활자금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말합니다.

바. 행복열매자금

연금지급개시 전 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용을 연금지급 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자유설계연금(Ⅰ), (Ⅱ), (Ⅲ), (Ⅳ)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다.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라.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 회한)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때(다만,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의 연금 지급해당일에 도래하였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단, 행복 열매자금 제외)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애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의 장해지급률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⑪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주 계약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주 계약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

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① 연금수익자는 연금지급형태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금수령의 일시중지(이하 ‘연금수령 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금수령 일시중지는 계약자와 연금수익자가 같은 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수익자는 연금지급개시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최대 3회까지 연금수령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금수익자가 연금수령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년이 지나기 전까지 연금수령 일시중지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연금수령이 일시중지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연금수령 일시중지의 종료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년까지 연금수익자가 선택한 횟수에 따라 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한 연금(이자 포함)부터 순차적으로 연금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이후 「보증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년이 되는 시점에 연금수령 일시중지의 종료가 자동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아 연금수령이 일시중지된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자 포함) 전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일시중지된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자 포함) 중 미수령 금액을 함께 연금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하더라도 보험기간 및 보증지급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

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약관용어 설명 】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약관용어 설명 】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제1조(목적) 제2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청약할 때 다음에 정한 종신연금 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종신연금
 - 개인연금형 : 10년보증지급형 ~ 40년보증지급형, 100세보증지급형
 - 부부연금형 : 10년보증지급형 ~ 40년보증지급형, 100세보증지급형

제20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종신연금[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며, 부부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하 '주피보험자'라고 합니다)과 연금지급 개시할 때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른 부부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자격취득시점부터의 연금액은 새로이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 ⑥ 종신연금[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을 제외한 다른 연금지급형태의 경우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전자서명법** : 디지털적인 수단으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것을 도장을 찍은 종이 등 기존 서류에 대해 한 서명이나 사용인감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법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항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2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용어 설명]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 **심신상실자** :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 **심신박약자** :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
 2.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보험료납입기간
 3. 계약자
 4. 연금개시나이
 5.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
 6. 연금의 지급형태

7.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 역시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감액된 부분과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감액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해지환급금 지급예시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감 액 전	감 액 후
기본보험료	100만원	50만원
감액시점의 해지환급금	800만원	400만원
감액시 지급금액	400만원 =(800만원 - 400만원)	

- ⑥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 납입기간과 변경 후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자는 제1항 제4호의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 개시 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의 연장은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⑧ 계약자는 제1항 제5호의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은 0% ~ 50%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합니다.
- ⑨ 계약자는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

형)으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경우 조기집중기간(5년~20년) 및 조기집중배수(2배~5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종신연금

- 개인연금형 : 10년보증지급형 ~ 40년보증지급형, 100세보증지급형
- 부부연금형 : 10년보증지급형 ~ 40년보증지급형, 100세보증지급형

2.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20년보증지급형

3.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5년확정형, 10년확정형, 15년확정형, 20년확정형, 30년확정형

4. 상속연금(개인연금형)

5. 자유설계연금(Ⅰ)형

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부부연금형 : 종신연금(부부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6. 자유설계연금(Ⅱ)형

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부부연금형 : 종신연금(부부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7. 자유설계연금(Ⅲ)형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8. 자유설계연금(Ⅳ)형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⑩ 계약자가 제9항에 따라 자유설계연금(Ⅰ), (Ⅱ), (Ⅲ), (Ⅳ)형으로 변경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에 대하여 조립하는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분할비율(이하 ‘연금분할비율’이라 합니다)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⑪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⑫ 제9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연금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

여 연금지급형태를 자유설계연금(I)형 또는 자유설계연금(III)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나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예1) 2014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5년 6개월 11일
 ⇒ **보험나이 26세**

예2) 2014년 11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2014년 11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6년 1개월 11일
 ⇒ **보험나이 26세**

제25조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③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나목의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

의 200% 이내로 하며,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제39조(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합계액(이하 '인출금액 합계액'이라 합니다)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최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하며, 경과기간에 따른 최대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④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 $(\text{월납 기본보험료} \times \text{가입후 경과월수} + \text{선납보험료}) \times 200\%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text{인출금액 합계액}$ '으로 합니다.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 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으로 이체하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 리비용을 차감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로서 납입일시중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대체보험료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의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특약의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본보험료만 납입하되, 특약이 부가된 경우로서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중인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납입일시중지 신청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포함)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과 보험료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④ 납입일시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으로 하고,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최대한도로 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 신청시점에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1년간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 신청 전으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리며,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매월 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

=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과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납입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다만, 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기본보험료 납입면제를 위한 보장계약보험료 제외)와 납입 중 계약관리비용의

합계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합니다.

- ⑧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의해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납입면제사유 발생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주계약 기본보험료는 회사에서 납입됩니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사유 발생이전의 납입일시중지기간은 납입기간에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의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
- ②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자유설계연금(Ⅰ), (Ⅱ), (Ⅳ)형의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계약자가 선택한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

(가입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1.25% 최저보증)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 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25%일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25%)로 적립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life.co.kr)이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안내’에서 공시합니다.

제3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을 계산 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8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의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에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잔존 납입중지월수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과 제39조(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생활자금의 총합계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출 후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 예시

가정) 해지환급금 300만원,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600만원,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 인출 후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100만원)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120만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야 하므로 2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⑤ 제1항에 의해 중도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 기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개시이후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1.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2. 신청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② 생활자금은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생활자금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생활자금은 신청일 이후 두 번째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매월 지급하며, 생활자금 자동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생활자금 자동 인출을 신청한 경우 생활자금의 지급횟수는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서 정한 중도인출 신청 가능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는 중지되며, 중지 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가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2.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3. 제27조(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 제3항의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4.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의한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 5. 제40조(보험계약대출)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
- ⑥ 제5항에 의해 생활자금자동인출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는 계약자의 재신청이 있을 때 제1항에 따라 재시행 합니다.
- ⑦ 제1항에 의한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산출시 적용된 공시이율 및 인출시점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 ⑧ 제1항 및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생활자금과 중도인출금의 총합계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⑨ 생활자금 자동인출 시 생활자금 및 생활자금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

제4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8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9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8관 행복열매자금 특칙

제51조 【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계약자가 ‘행복열매자금’을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52조 【‘행복열매자금’의 설정】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0%~50%내에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행복열매자금은 매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제53조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 ① 연금지급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열매자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연간 중도인출가능 횟수	최소 인출금액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10만원 이상

- ②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또는 피보험자(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에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미인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인출 잔액을 일시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후에는 ‘행복열매자금 중도인출총액 - 행복열매자금 추가납입총액’과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④ 제3항에 의한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적립순 보험료를 행복열매자금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직후의 행복열매

자금적립금 잔액이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의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을 전부 인출한 이후에는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제54조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기타사항】

- ① 계약자가 행복열매자금을 설정한 경우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행복열매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52조(‘행복열매자금’의 설정) 제1항의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재해 장해 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2,000만원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2.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구분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개 인 연 금 형	종신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합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구분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부 부 연 금 형	종신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 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보증지급기간(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까지 연금 지급 후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를 지급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절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조기 집중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 및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기간(5년~20년)과 조기집중배수(2배~5배)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연금액 지급(20년 보증 지급) - 조기집중기간 : 연금액×조기집중배수 - 조기집중기간 이후 : 연금액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절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확정 기간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속 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생존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 지급]
행복 열매 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마. 자유설계연금(Ⅰ)형(연금지급 개시전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종신연금과 확정기간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위의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보증지급기간 및 개인/부부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기간연금은 위의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 가능]

바. 자유설계연금(Ⅱ)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종신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위의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보증지급기간 및 개인/부부연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사. 자유설계연금(Ⅲ)형(연금지급 개시전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확정기간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확정기간연금은 위의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아. 자유설계연금(Ⅳ)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조기집중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조기집중연금은 위의 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조기집중기간 및 조기집중배수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2.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및 제39조(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의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3.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보장계약보험료(기본보험료 납입면제를 위한 보장계약보험료 제외) 및 납입후 계약

- 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4.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5.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6. 계약자는 자유설계연금(Ⅰ), (Ⅱ), (Ⅲ), (Ⅳ)형으로 변경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에 대하여 연금분할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7.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 40년,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종신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8.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조기집중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9.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Ⅲ)형에서 확정기간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 미지급된 각 확정기간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10.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Ⅲ)형에서 확정기간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종신연금 및 조기집중연금 미지급분(보증지급기간까지), 확정기간연금 미지급분(연금지급기간까지)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상속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Ⅱ), (Ⅲ), (Ⅳ)형에서 상속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생존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12.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보험료

-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행복열매자금 선택시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행복열매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4. '행복열매자금'이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행복열매자금은 매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15.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0%~50%내에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6. 연금지급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17.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또는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에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미인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인출 잔액을 일시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8.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한 후에는 '행복열매자금 중도인출총액 - 행복열매자금 추가납입총액'과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19.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행복열매자금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20.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직후의 행복열매자금적립금 잔액이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의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을 전부 인출한 이후에는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21.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자유설계연금(I)형 또는 자유설계연금(III)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I),(II)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IV)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 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일반형 주계약 약관의 [별표 2]와 동일 -

[별표 3]

장 해 분 류 표

-일반형 주계약 약관의 [별표 3]과 동일 -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및 제37조 제3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고도재해장해 보험금 (제3조 제1호),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제25조 제2항)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연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연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행복열매자금의 적립이율 계산은 연금(제3조 제2호)의 적립이율과 동일합니다.

지정대리 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목 차

제1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36
제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36
제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136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37
제3조 적용대상	137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137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37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37
제6조 보험금의 청구	137
제4관 기타사항	138
제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38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및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2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합니다.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첨 1]

고객권리 안내문

이 <고객권리 안내문>은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가 수집 등 처리(수집·조화·보유·이용·제공·파기 등 포함)하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및 그 밖의 고객정보(이하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고객님의 관계법규상 제반 권리를 명확하게 알려 드리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7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제작·배포하는 안내문입니다.

1. 고객정보의 처리 목적과 범위, 고객권리의 유형 및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가. 고객정보의 처리 목적과 범위

당사는 고객정보를 고객님의께서 동의·선택하신 처리 목적과 범위,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과 이행, 업무의 내부적 처리 및 특정업무의 위탁 처리 등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목적 범위 내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고객권리의 유형 분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정보주체의 권리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본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고지받거나 제공받을 권리
- 본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본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권리
- 본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또는 파기를 요구할 권리
- 본인정보의 처리 또는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다. 고객정보 처리 동의내용에 따른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정보의 수집 등 처리에 대한 고객님의 동의사항은 신청하신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유지, 계약의 이행, 금융서비스의 이용 또는 본인여부 확인 등 관계법규의 준수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에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 목적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등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의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신청하신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기본적 금융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새로운 상품·서비스 안내, 이벤트 경품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고객님의 해당 불이익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2.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 고객의 구체적 권리

가.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권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제2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인 정보주체는 본인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하여 동의 여부나 동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려는 경우나 고객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동의를 받습니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내용 및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처리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유지하며, 사후 고지 절차를 거칩니다)
5. 그 밖에 정보 처리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 다만,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의 판단 목적 등을 위해 고객정보의 처리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 정보주체가 그러한 목적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거부될 수 있고,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당사가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본인 신용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해 통지를 받거나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 및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에 대한 조회권(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 제34조 및 제35조)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제공하려는 당사 또는 제공받은 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8조 제12항 및 관련 별표2 의2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개별적인 사전 통지에 갈음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 : 2016.3.11.]
- 한편, 신용정보주체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수단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내역을 본인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조회 및 통지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편통지 등 요구 시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16.3.12.]

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대한 고지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당사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집 출처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신용정보법 제36조)

당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은 당사에 대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의 철회권 및 <영업목적 연락> 중지 청구권(신용정보법 제37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영업 등 목적의 <제공 동의>를 한 후에도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또는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제공 동의에 대해서는 철회하실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고객이 그 제공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한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연락 중지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또는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영업목적

연락 중지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당사나 모집업무수탁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유기간 경과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신용정보법 제38조의3) 및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당사와의 금융거래 등 모든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그 상거래관계종료일로부터 5년(단,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의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사에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비슷한 방법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해당 정보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관리되고,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6.3.12.]

- 한편, 개인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

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립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 본인정보 열람권 및 오류정보 정정·삭제 청구권(신용정보법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

고객님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고객정보에 대해 그 열람(사본의 제공 포함)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주체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나아가, 열람하거나 제공받으신 고객님의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를 중단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정정·삭제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정·삭제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7일, 그 밖의 개인정보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서면(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한편, 오류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에 연락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life.co.kr) 내 사이버창구를 이용하거나 본사 또는 가까운 지역총국·지점으로 내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법감시부 : (전화) 02-3786-7341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서대문타워 14층
- 당사 콜센터 : 1544-4000

아.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본인 신용정보의 무료 제공요구·열람권(신용정보법 제39조)

개인인 고객님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매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조회회사 연락처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http://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http://www.kisinfo.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6000 (<http://www.kcb4u.com>)

자. 신용정보 누설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당사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제3자에게 누설(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정보 누설(또는 유출)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또는 유출)된 정보의 확산 및 추가 누설(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지체없이 그 조치의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누설(또는 유출)된 신용정보(또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누설(또는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당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차. 손해배상청구권(신용정보법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보장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 권리행사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고충상담 필요시 연락처

위의 각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 또는 애로를 느끼시거나 개인(신용)정보 관련 고충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각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전략총괄부사장
(전화) 02-3786-7101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서대문타워 13층
- 당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준법감시인
(전화) 02-3786-7340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서대문타워 14층
-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담당부서 : 준법감시부
(전화) 02-3786-7341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서대문타워 14층
- 당사 콜센터 : 1544-4000
- 생명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02-2262-6600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16층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 민원실
(전화) (국번없이) 1332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별첨 2]

고객정보 취급방침

NH농협금융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16.2.15.개정)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위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위탁한 금전의 총액
2. 위탁한 증권의 총액
3. 위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위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NH농협금융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016.2.15.개정)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차부도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예탁한 금전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금융지주회사 등의 상호 및 업종

NH농협금융의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금융지주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은행),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CA자산운용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 NH선물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저축은행 주식회사(상호금융업)입니다. (2016.2.15.개정)

III. 고객정보의 제공처

NH농협금융의 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NH-CA자산운용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NH선물 주식회사, NH저축은행 주식회사입니다. (2016.2.15.개정)

IV.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NH농협금융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라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3.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재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통지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2.15.신설)
8.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은행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생명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NH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	NH-CA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NH선물	고객정보관리인
NH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M E M O

 M E M O

 M E M O